

충청북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1. 제 출 자 : 충청북도지사

2.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

가. 제출일자 : 2000년 2월 28일

나. 회부일자 : 2000년 2월 29일

3. 제안이유

가. 한국자산관리공사, 중고건설기계 매매업자 등 국가정책 목적달성에 필요한 분야에 대하여는 세제지원을 확대하고

나. 일부 정책목적이 달성된 분야는 세제지원을 폐지하며,

다. 지방세 감면과 관련된 관계법령의 개정에 따른 감면 조례의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4. 주요골자

가. 세제지원을 위한 규정 확대 또는 신설

○ 국가유공자에 대한 감면 확대

- 자활용사촌안의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등록세 및 공동시설세를 면제함에 있어 국가유공자인 중상이자 개인이 취득하는 부동산만 감면하던 것을

⇒ 중상이자 들이 단체를 구성하여 단체명의로 취득하는 자활용사촌안의 부동산에 대하여도 면제 (안 제2조 제1항)

- 국가유공자를 위한 자동차 취득시 취득세·등록세 및 면허세를 면제함에 있어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직계존·비속명의로의 등록 차량뿐만 아니라

⇒ 국가유공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또는 형제·자매 명의로 등록(단, 국가유공자와 공동으로 등록시에 한함)하는 경우에도 도세를 면제하되,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이내에 사망·혼인 등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도세를 추징(안 제2조 제3항)

○ 장애인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 확대

- 장애인을 위한 자동차 취득시 취득세·등록세 및 면허세를 면제함에 있어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직계존·비속명의로의 등록 차량뿐만 아니라

⇒ 장애인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또는 형제·자매 명의로 등록(단,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시에 한함)하는 경우에도 도세를 면제하되,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이내에 사망·혼인 등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도세를 추징(안 제4조 제1항)

- 중고건설기계매매업자에 대한 감면규정 신설
 - 감면혜택을 받고 있는 중고자동차 매매업자와의 형평성 제고를 위하여
 - ⇒ 중고건설기계 매매업을 신고한 자가 매매용으로 취득하는 중고건설기계에 대하여 취득세를 면제 (안 제13조 제2항)

- 한국자산관리공사 등에 대한 감면규정 신설
 - 구조조정 대상기업의 재무구조 개선을 지원하기 위하여 한시적 (감면기한 2000년말) 으로 감면하는 것으로
 - ⇒ 한국자산관리공사나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 또는 기업구조조정 조합의 구조조정대상 기업으로부터 재무구조 개선을 목적으로 매각하는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에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 (안 제28조의 6)

나. 세제지원 규정 폐지

- 주차장용 부동산과 도시가스 사업자에 대한 감면 규정 폐지
 - 도심의 주차난 해소와 도시가스사업자의 초기 시설투자를 촉진시키기 위해 도세를 감면하였으나
 - ⇒ 주차장업과 도시가스사업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수익사업으로 공공성이 미약하므로 감면규정을 폐지하여 과세전환 (현행 제21조)

다. 기타 관계법령의 개정에 따른 조문 정리

- 자동차관리법의 개정으로 자동차관리사업이 허가제에서
 ⇒ 등록제로 됨에 따른 조문 정리
 (안 제2조 제4항, 제4조 제2항, 제13조 제1항)
- 임대주택법에 의하여 감면된 도세를 추진함에 있어, 임대
 주택법에 의하도록 관련 법규를 포괄적으로 규정한 것을
 ⇒ 임대주택법 제12조에 한하도록 조문을 정비 (안 제15조 제1항)
- 관련법령의 제목 및 관련조문 개정에 따른 정리 등
 - 교육법을 ⇒ 교육기본법으로 (안 제10조)
 - 자동차운수사업법을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으로 (안 제11조)
 - 농수산물가공산업육성및품질관리에관한법률을
 ⇒ 농수산물가공산업육성법으로 (안 제19조 제1항)
 - 외국인투자촉진법을 ⇒ 조세특례제한법으로 함 (안 제28조의 5)

5. 검토의견

- 충청북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검토한 바
 - 국가유공자들이 단체명의로 부동산 취득시와 직계비속의 배우자 또는 형제·자매 명의로 등록시에 도세 면제 확대와
 - 장애인을 위한 자동차 취득시 직계비속의 배우자 또는 형제자매 명의로 등록시에 도세를 면제하여 주고
 - 중고건설기계 매매업 신고자에 대하여 취득세를 면제하여 중고자동차 매매업자와의 형평성 제고와

- 한국자산관리공사,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 기업구조조정조합이 채무구조개선을 목적으로 매각하는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에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여 주려는 것임.
- 도심 주차난 해소를 위해 주차장 영업자와 도시가스 사업자의 초기 시설투자를 유도하기 위하여 시행하던 취득세, 등록세, 공동시설세 감면은 공공성이 미약하여 과세로 전환하고
- 자동차관리법의 개정으로 자동차관리사업이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됨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고
- 임대주택법에 의하여 감면된 도세를 추징함에 있어, 임대주택법에 의하도록 관련 법류를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던 것을 임대주택법 제12조의 임대주택 매각 기간을 명확히 하고
- 관련법령의 제목 및 조문 개정에 따라 법령과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으로써
- 이는 상위법의 개정에 따른 조례를 정비하는 것이나 도시가스 사업의 감면 폐지로 인한 과세저항 대책 및 주차장에 대한 도세 감면 폐지에 따른 예상 문제점 등 세수실태와 향후 대책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 됨.

붙임 : 충청북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